

의안번호	2213293
의 퇴 인	김예지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10.
추계번호	25C5323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4억 8,200만원 (연평균 12억 9,600만원) 이상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수 확대(안 제46조)	41.4	41.4	41.4	41.4	41.4	207	41.4
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추가 설치(안 제53조)	73	73	73	73	73	365	73
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추가 설치(안 제54조)	1,182	1,182	1,182	1,182	1,182	5,909	1,182
추가재정소요	1,296	1,296	1,296	1,296	1,296	6,482	1,296

주: 합계는 단수 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6조 (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)	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① 동료지원인, ② 인권전문가 등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, ③ 정신질환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각 1인 이상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47조 (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)	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입원심사소위원회에 입원등을 회부할 때 해당자에게 입원심사소위원회에서 절차조력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48조 (입원적합성의 조사)	입원등을 한 사람이 정신의료기관 등의 종사자와 면담을 할 때에는 절차조력인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4	안 제53조 (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)	(제1항) 정신의료기관 등이 없는 시·군·구에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을 삭제 (제4항) 시·도지사 소속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최소 인원은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고(최대 인원은 15인으로 유지),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는 현행 6~12명에서 10~15명으로 조정	의무규정
5	안 제54조 (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·운영)	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5~9명에서 8~12명으로 변경	의무규정
6	안 제56조 (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)	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임원등을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에, 당사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,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함	의무규정
7	안 제57조 (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)	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심사를 할 때에는 심사 대상자에게 절차조력인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46조 (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)	○	○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2	안 제47조 (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)	×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안 제48조 (입원적합성의 조사)	×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4	안 제53조 (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)	○	○ 도봉구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5	안 제54조 (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·운영)	○	◦ 도봉구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6	안 제56조 (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)	×	◦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7	안 제57조 (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)	×	◦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- 개정안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·정신건강심의위원회·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 수가 확대되고, 당사자에게 절차조력인 또는 변호인으로 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그러나 안 제47조·제48조·제56조·제57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하여 본 추계서의 추계 대상에서 제외
 - (안 제47조·제56조) 당사자가 각 위원회 심사·심의 과정에서 절차조력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서면 통지할 경우 관련 내용을 발송하는 데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서면 통지 방법 및 횟수를 추정하기 어려움
 - (안 제48조·제67조) 당사자가 각 위원회 심사·심의 과정에서 절차조력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권리 보장의 방법과 소요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46조)

□ 개정안 시행 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설치된 5개 기관에 각 3인이 신규로 위촉된다고 가정

○ 현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곳은 국립정신건강센터, 국립부곡병원, 국립나주병원, 국립춘천병원, 국립공주병원

□ 신규위원은 1개의 소위원회에만 소속되고, 매년 2024년 기관별 평균 소위원회 회의 횟수만큼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기관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2024년 소위원회별 평균 회의 횟수

(단위: 회)

구 분	국립정신건강 센터	국립부곡병원	국립나주병원	국립춘천병원	국립공주병원
소위원회별 평균 회의 횟수	24	12	16	9	8

자료: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□ 회의수당 단가는 5개 기관의 공통 단가인 회당 20만원이 추계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□ 추계결과,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할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억 700만원(연평균 4,140만원)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3]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수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추가재정소요	41.4	41.4	41.4	41.4	41.4	207	41.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53조)¹⁾

- 개정안에 따라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 수가 현행 6~12명에서 10~15명으로 조정되고, 현행법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기초지자체가 신규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미설치 지자체는 52개인 것으로 조사됨
- 개정안 시행 시 기 설치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각 3인의 위원을 신규 위촉하고, 미설치 위원회는 최소 인원인 각 10인의 위원을 신규로 위촉한다고 가정
 - 미설치 위원회 수는 2022년 말 기준 52개를 준용
 - 기 설치 위원회는 174개로 가정(총 226개 기초지자체 중 52개를 제외)
-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2026년도 예산서를 참고하여, 연 1회 회의를 개최하고, 회의수당으로 1인당 및 1회당 7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결과,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해당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억 6,500만원(연평균 7,300만원)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4]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추가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추가재정소요	73	73	73	73	73	365	7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1) 제4항에 따른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최소 인원이 상향 조정되었으나 최대 인원이 유지되므로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

다.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54조)

- 개정안에 따라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 수가 현행 5~9명에서 8~12명으로 조정되고, 현행법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기초지자체가 신규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 중에서 임명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, 개정안에 따라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는 기초지자체는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도 함께 설치하여야 함
- 개정안 시행 시 기 설치된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각 3인의 위원을 신규 위촉하고, 미설치 위원회는 최소 인원인 각 8인의 위원을 신규로 위촉한다고 가정
 - 미설치 위원회 수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동일하게 2022년 말 기준 52개를 준용
-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2026년도 예산서를 참고하여, 연 18회 회의를 개최하고, 회의수당으로 1인당 및 1회당 7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결과,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해당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9억 900만원(연평균 11억 8,200만원)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5]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추가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추가재정소요	1,182	1,182	1,182	1,182	1,182	5,909	1,18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
-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